

제268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5차 회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19. 11. 28.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19년 11월 28일
전문위원 배 금 택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2019 - 91
- 나. 제 출 자: 강서구청장
- 다. 제출일자: 2019년 11월 11일
- 라. 회부일자: 2019년 11월 20일

2. 개정이유

보건의료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보건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하여 의료서비스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보건지소 설치를 위한 근거 규정 마련(안 제11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법」, 「보건의료기본법」, 「지역의료법」
「지역의료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참조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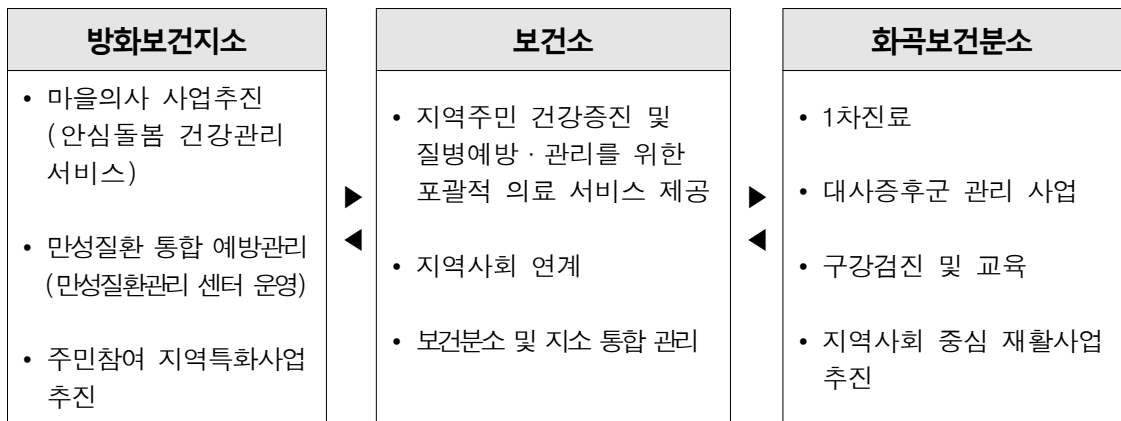
라. 입법예고(2019. 10. 16. ~ 11. 5.)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가. 개정 배경

- 최근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 및 질병예방 관리를 위한 포괄적 통합 지역의료 서비스 제공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 2022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서울케어 건강돌봄사업 추진 기반 구축과 보건소 및 보건분소의 지역적 편중에 따른 공공보건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보건지소를 설치·운영하여 강서구 건강안전망 구축에 힘쓰고자 함.

< 강서구 건강안전망 운영 개념도 >



나. 주요 개정내용

- 보건지소 설치를 위한 근거규정 마련(안 제11조)
 - 보건소 “보건행정과”내에 “보건지소”를 설치



다. 종합 의견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지방행정기관의 조직은 서로 기능상 중복이 없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하여야 하며 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수행하여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과 기관의 균형성을 고려하여 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개정안은 지역사회 참여형 “민관 안심돌봄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건강취약 계층에 대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것으로 증가하는 공공보건 의료사업의 성질과 양을 고려하여 지역간 균형성 유지를 위한 기구 설치이므로 타당한 개정 조례안으로 판단됨.

참고

자치구별 보건소 현황

(2019. 10월 기준)

연번	자치구명 (보건소)	보건분소명	보건지소명	비고
1	강남구	수서분소	-	
2	강동구	-	강일보건지소	
3	강북구	삼각산분소	-	
4	강서구	화곡보건분소	-	
5	관악구	난곡보건분소	관악보건지소	
6	광진구	-	종곡보건지소	
			자양보건지소	
7	구로구	-	오류보건지소	
		-	G밸리 보건지소	'19 개소예정
8	금천구	독산 보건분소	박미마을보건지소	
9	노원구	-	월계보건지소	
			공릉보건지소	
			상계보건지소	
10	도봉구	-	창동보건지소	
11	동대문구	구민건강증진센터	-	
12	동작구	사당분소	-	
13	마포구	서강분소	아현보건지소	
14	서대문구	홍은분소	가좌보건지소	
		천연분소		
15	서초구	-	방배보건지소	
			서초보건지소	
16	성동구	금호분소	성수보건지소	
		성수분소		
17	성북구	-	정릉보건지소	
			동선보건지소	
18	송파구	-	거여보건지소	
19	양천구	-	목동보건지소	
			신월보건지소	
20	영등포구	보건분소	-	
21	용산구	원효로 보건분소	-	
22	은평구	불광분소	구산보건지소	
			응암보건지소	
23	종로구	동부진료소	-	
24	중 구	중립보건분소	약수보건지소	
			황학보건지소	
			다산보건지소	
25	중랑구	면목보건분소	상봉보건지소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기구와 정원의 관리목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이하 "기구"라 한다)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을 관리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소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여건·업무의 성질과 양 등에 따라 정원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지방행정기관의 조직은 서로 기능상의 중복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3. 지방행정기관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도 조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명의 연간 사무량이 250일 이상인 사무의 경우에는 정원으로 책정되지 아니한 인력을 배치하여 이를 처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와 관련된 사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기구의 설치시 고려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구를 설치하거나 개편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독자성·계속성
2. 기구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3. 규모와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관과의 균형성
4. 주민편의, 행정능률 등을 고려한 효율성
5. 통솔범위, 기능의 중복유무 등 기구의 능률성
6. 사무의 위탁가능성

②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이 가능한 사무나 지방공사·지방공단·지방자치단체조합이나 행정협의회의 설립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무에 대하여는 기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에는 상설의 사무처나 사무국·과·담당관을 둘 수 없다.

□ 지방자치법

제113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건강 관련 물품이나 건강 관련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각종 국민 건강 위해 요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지역보건법

제10조(보건소의 설치) ①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다.

② 동일한 시·군·구에 2개 이상의 보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총괄하는 보건소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①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1.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2.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연구 및 평가
 3.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관리·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관리
 4.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 가. 국민건강증진·구강건강·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 다.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증진
 - 라. 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증진
 - 마.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 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 사.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사업
-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소 기능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보건지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의 지소(이하 "보건지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24조(비용의 보조) ① 국가와 시·도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설치비와 부대비에 있어서는 그 3분의 2 이내로 하고, 운영비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에 있어서는 그 2분의 1 이내로 한다.

□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0조(보건지소의 설치) 법 제13조에 따른 보건지소는 읍·면(보건소가 설치된 읍·면은 제외한다)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운영하거나 여러 개의 보건지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0조(보건지소의 설치)법 제13조에 따른 보건지소는 읍·면(보건소가 설치된 읍·면은 제외한다)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운영하거나 여러 개의 보건지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